

## 2022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 현황

(표 1) 기능성화장품 심사·보고 품목 건수

구분	심사		보고		총 계
	제조	수입	제조	수입	
품목수	405	80	8,378	584	9,447
총 계	485		8,962		

(표 2) 기능성 효능별 심사 건수

구분	기능성	심사 건수	비율(%)
단일기능성	미백	17	5.7
	주름개선	20	6.7
	자외선차단	176	58.9
	염모(탈염·탈색 포함)	39	13.0
	제모(체모의 제거)	0	0
	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	17	5.7
	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	26	8.7
	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	3	1.0
	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	1	0.3
	소 계	299	100
이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	76	72.4
	미백+자외선	14	13.3
	주름개선+자외선	15	14.3
	소 계	105	100
삼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+자외선	81	100
총 계		485	100

(표 3) 기능성 효능별 보고 건수

구분	기능성	고시 품목 (1호)	기심사 품목 (2호)	고시+ 기심사 (3호)	총 계	비율 (%)
단일기능성	미백	497	26	0	523	11.4
	주름개선	747	128	0	875	19.1
	자외선차단	0	819	0	819	17.9
	염모(탈염·탈색 포함)	1,364	34	0	1,398	30.5
	체모(체모의 제거)	16	1	0	17	0.4
	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	0	818	0	818	17.9
	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	0	127	0	127	2.8
	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	0	0	0	0	0
	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	0	0	0	0	0
	소 계	2,624	1,953	0	4,577	100
이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	2,910	338	0	3,248	98.5
	미백+자외선	0	14	11	25	0.8
	주름개선+자외선	0	13	11	24	0.7
	소 계	2,910	365	22	3,297	100
삼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+자외선	0	865	223	1,088	100
총 계		5,534	3,183	245	8,962	100


(표 4) 기능성 효능별 심사 비율

구분	기능성	심사 건수	비율(%)
단일기능성	미백	17	3.5
	주름개선	20	4.1
	자외선차단	176	36.3
	염모(탈염·탈색 포함)	39	8.0
	제모(제모의 제거)	0	0.0
	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	17	3.5
	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	26	5.4
	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	3	0.6
	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	1	0.2
	소 계	299	61.6
이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	76	15.7
	미백+자외선	14	2.9
	주름개선+자외선	15	3.1
	소 계	105	21.6
삼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+자외선	81	16.7
총 계		485	100

(표 5) 기능성 효능별 보고 비율

구분	기능성	고시 품목 (1호)	기심사 품목 (2호)	고시+ 기심사 (3호)	총 계	비율 (%)
단일기능성	미백	497	26	0	523	5.8
	주름개선	747	128	0	875	9.8
	자외선차단	0	819	0	819	9.1
	염모(탈염·탈색 포함)	1,364	34	0	1,398	15.6
	제모(체모의 제거)	16	1	0	17	0.2
	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	0	818	0	818	9.1
	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	0	127	0	127	1.4
	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	0	0	0	0	0.0
	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	0	0	0	0	0.0
	소 계	2,624	1,953	0	4,577	51.1
이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	2,910	338	0	3,248	36.2
	미백+자외선	0	14	11	25	0.3
	주름개선+자외선	0	13	11	24	0.3
	소 계	2,910	365	22	3,297	36.8
삼중기능성	미백+주름개선+자외선	0	865	223	1,088	12.1
총 계		5,534	3,183	245	8,962	100

※ 본 통계자료는 정상품목(취하, 취소 품목제외)만 집계하였음(2022.01.01.-2022.06.30.기준)



**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?**

- 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**비밀보장, 불이익 보호조치, 신분보호조치**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

♣보호조치 요구 방법  
전화 02-360-3761 /우편 (120-705)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/팩스 02-360-3567